

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00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강석주, 김성준,
김영철, 김원태, 남창진,
민병주, 박승진, 박칠성,
봉양순, 서상열, 송도호,
신복자, 오금란, 왕정순,
유만희, 이상욱, 이영실,
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
임종국, 정준호, 최기찬,
한 · 신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지원대상을 서울시민 외에 ‘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’까지 포함하고 있음.
이는 조례의 기본 취지인 ‘서울시민의 건강증진’이라는 목적 및 적용 대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, 현재 시행 중인 ‘서울형 헬스케어(손목닥터9988)’ 사업은 지원대상을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‘서울 소재 직장인 · 대학생 · 자영업자’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어 조례와 실제 사업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.
- 또한, ‘서울형 헬스케어(손목닥터9988)’ 사업의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포인트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,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지원대상을 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’으로 한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, 조례 해석 및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, 제한된 예산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를 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’으로 한정하여 규정함.(안 제9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
장의 종사자로”를 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비용의 지원) ①·② (생략)	제9조(비용의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<u>서울특별시</u> 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<u>서울특별시</u> 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.	③ ----- ----- <u>시에</u> 주민 <u>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</u>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현행 같은 조례의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지원대상을 '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'으로 한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므로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